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Q 월급 통상임금에 가산임금,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A 근로기준법 제49조에 휴게시간을 제하고 1주간에 44시간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법 제54조에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대한 임금을 월급 금액으로 지급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통상임금에는 동법 제54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여기서 월급금액이라 함은 임금이 월 단위로 결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형태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법정근로시간(1주간 44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한 임금은 월 기본임금속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가산임금도 이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당사자간 합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바, 가산임금을 포함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가산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4시간분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사료됨.

또한 매월 근로일수의 변동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월기본임금과

는 별도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따로 지급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주차수당)은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월기본임금 속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음.

Q 24시간 격일제 근로의 경우 1주간 비번일 중 1일을 유급처리시 별도로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A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에 의하여 감시·단속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적용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규정이 적용되며, 따라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포괄임금 방식으로 임금을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임.

다만,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간의 비번일 중 1일을 유급 처리하는 경우라면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한솔노무사사무소(031-877-7332-3)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묘지에 쌍분 형태의 합장이 가능한지 여부】

Q 저는甲으로부터 분묘가 있는 임야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甲은 원래 있던 자기의 부친 분묘 옆에 새로이 분묘 하나를 더 설치하면서, 이는 자기의 어머니 분묘로서 두 분은 부부이므로 합장을 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있던 분묘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이 분묘가 설치될 경우 저는 임야훼손 등의 손해가 크므로 새로이 들어선 분묘를 이장시킬 방법은 없는지요?

A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1994.12.23. 94타15530) ①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대법원 1967.10.12. 67타920), ②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취득한 경우(대법원 1996.6.14. 96타4036),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분묘이전의 약정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대법원 1967.10.12. 67타920) 등의 경우에 그 분

묘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이라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대법원 1994.12.23. 94타15530),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그 분묘가 설치되고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의 합장을 위하여 쌍분(雙墳) 형태의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 것임이나(민법 제185조, 제279조, 대법원 1997.5.23. 95다29086, 29093), 따라서 귀하께서는 甲을 상대로 분묘철거청구를 하여 철거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 변호사 김제동 법률사무소 (031-829-9311)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Q 나는 20세의 여성으로 이따금 집에서 흰 젤리 같은 것이 흘러내립니다. 감촉은 젤라틴과 같아요. 그것은 보통의 노란빛이나 흰 크림 모양의 분비물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한두 달에 한 번은 일어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조심해야 하나요?

A 당신이 본 것은 아마 정상적인 자궁 경부의 점막이거나 질의 윤활액일 것이다.

만일 그 밖의 증상(즉 질의 가려움, 염증, 통증)이 없었다면 당신이 경험한 변화는 정상일 것이다.

의사가 당신의 자궁 경부의 상태를 체크하여 분비물의 성분에 대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산부인과 검진 때

의사에게 얘기하라. 질 분비물의 모양과 구성은 질내 상태가 호르몬 농도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매달 생식 주기를 통해서 변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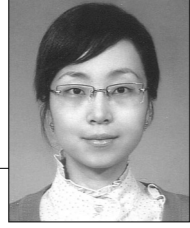
특히 자궁 경부에서 분비되는 점액 성분이 그렇다. 보통 자궁 경부의 점액은 생식 주기의 중반기부터 더욱 많아지며 이때가 배란 시기가 되어 점액의 빛깔과 감촉이 다른 때와는 다르다. 이 특별한 점액은 자궁 경부에서 자궁에 걸쳐 정자의 여행을 수월하게 도와준다. 더욱이 성적으로 흥분하고 있을 때에 질에서 생산되는 윤활액도 또한 다른 질분비물과는 달라 보인다.

【간재이 보고서】 발췌

*문의 : 포천가족·성상담센터(031-542-3171)

의·학·상·식

포천병원 외과 과장 이지현



치핵

항문 주위에 병이 생기면 우리는 남에게 보이기 민망하다고 숨기고 혼자서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병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항문 주위의 질환은 숨기고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하여 치료시기를 놓치면 괜한 고생만 하게 됩니다. 항문이라는 특성 때문에 숨기고 싶지만 주저하지 마시고 빨리 병원을 찾으십시오.

항문 주위에 생기는 증상으로는 통증, 출혈, 항문종괴, 배농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상에 따라 병의 원인은 대략적으로 나눠보면 치핵, 치열, 항문주위 농양, 치루 등이 있으며 이 중 가장 흔한 치핵에 대해서만 간략히 언급하겠습니다.

치핵이란 항문주위 혈관이 늘어나면서 주위 점막이 늘어나서 생기는 병으로 주증상은 출혈, 항문 종괴, 통증이 있습니다. 치핵의 치료는 병의 정도에 따라 보존적 요법, 수술 요법 등이 있으며 완치를 위해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보존적인 요법의 목적은 치핵의 완화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병의 진행을

완화시켜 일상생활에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보존적 요법의 방법은 첫째 배변습관의 조절 즉 너무 오래 화장실에 앉아 있지 말고 배변시 힘을 너무 많이 주지 말고 변이 딱딱해지지 않게 매일 일정시간에 배변을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둘째로 생활습관의 조절 즉 쪼그리거나 책상다리를 하여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것을 피하십시오. 기타 주의 사항은 항문에 불편감이 있을시 좌욕을 하고 변비약이나 기타약제를 본인 마음대로 처방하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을 받으신 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존적인 요법으로 치료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증상이 있을시 전문의와 상의해서 제때로 된 치료를 일찍 시작하는 것이 병의 악화를 막고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길입니다.

*문의 :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031-539-9160)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중



Q 【장기예약매출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주거용건물 공급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당 법인이 다른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건축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공사비는 공사진행기준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연도의 수익과 비용은 어떠한 기준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요?

A 장기공사의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공사라 할지라도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특수한 경우에는 공사의 목적물이 인도되는 때 익금과 손금을 인식합니다. 시공회사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법인(시행회사)이 동 주택의 예약매출에 따른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총공사예정비' 및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는 건설 등의 계

약당시에 추정한 당해 법인의 공사원가와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으로 추정한 총공사원가와 동 원가 중 사업연도 별로 실제 발생한 공사비용의 누적액을 각각 의미하는 것이며, 동 공사원가에는 시행회사가 직접 부담하는 공사관련 보험료, 설계비 및 기술지원비와 시공회사에 대한 도급공사비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당초 도급계약서에 비하여 공사진행률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라면 감리단이 작성하고 시공회사가 확인한 '기성고 증명'상의 공정률을 공사진행률로 삼아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익금과 손금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공사기간이 1년 미만의 '단기공사'의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익금과 손금을 인식합니다.

*문의 : 세무사 박 운 중(031-872-6116)

늘봄전벤션웨딩·부페

출장부페

Big Event!

결혼식 고객 : 드림세탁기 무료증정
교회·회갑, 돌 고객 : 정수기 무료증정

송우리(구)시외버스터미널 뒤(이동폭포갈비 맞은편)
Tel. 031-543-2008, 8820

포천을 대표하는 꽃집

늘봄꽃 직매장

고객만족 5년 연속 1위

고객만족 이벤트

- 이벤트 1 20만원 이용시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이벤트 2 50만원 이용시 3만원 상당 꽃배달 무료이용권 드림
- 이벤트 3 100만원 이용시 5만원 상당 무료이용권 드림(주유권 증정)
- 이벤트 4 200만원 이용시 15만원 상당 무료이용권 드림(주유권 증정)

www.pocheonflower.co.kr

Tel. 080-540-3681, 542-3681, 542-8959 Fax. 031-543-1193
국민은행 : 219-21-0414110 농협 : 585-02-003557 예금주 강옥자